

대구고등법원 2024. 3. 19 선고 2023나111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3. 19 선고 2023나111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20488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를

담당변호사 신민수를

변론 종결 2024. 2. 27.

판결 선고 2024. 3. 19.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204887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443,519,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43,519,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553,821,02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443,519,8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8, 9행의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B이 상고하였다가 2018. 9. 20.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가 B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4. 15.까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채권¹⁾을 가지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2) 그런데 환수금채권은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날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채권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2016. 5.경부터 시작된 B의 의료법위반 등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계속 중이었고 그에 따라 2017. 4. 15.까지 환수금채권이 계속 발생된 점에 비추어, 위 환수금채권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부분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	248,859,000	130,000,000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	이 사건 건물	414,715,950	
3	제주시 I	5,141,4003) 2017년 개별공시지가 11,400원/m ² × 면적 451m ²	
4	제주시 J	47,139,0004) 2017년 개별공시지가 11,400원/m ² × 면적 4,135m ²	
5	제주시 K	6,829,5505) 2017년 개별공시지가 4,550원/m ² × 면적 1,501m ²	

1	이 사건 토지	248,859,000	130,000,000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	원고의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		3,232,502,430
합계	722,684,900	3,362,502,430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미 발생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B이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B이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B의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B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B에게 지급하는 등 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6, 26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B의 아내의 사촌의 남편으로 B과 사촌동서 사이이다.

(2) B은 2011. 3.부터 2015. 7.까지 L의료재단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1. 3.

1.부터 2015. 4. 30.까지 L의료재단이 운영하는 M병원의 장례의전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B은 2015. 4. 13.부터 2017. 3. 2.까지 이 사건 E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중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B의 제의로 2016. 5. 27.부터 2017. 3.

2.까지 이 사건 E조합의 등기이사로서 재직하는 등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① 원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0. 21.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행정조사를 한 다음 2016. 12. 6. 대구지방법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후인 2017. 2. 27. 체결된 점, ② 피고는 B의 의료법위반 등에 대한 방조혐의로 2017. 6. 30. 경찰조사를, 2017. 8. 17. 검찰조사를 각 받은 점, ③ 피고는 2017. 1. 9.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은 원고가 행정조사 후 수사를 의뢰한 2016. 12. 6.부터 불과 약 1달 이후인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의뢰 당시 이 사건 E조합의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와 B의 거주지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와 사촌동서 사이일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의 의료법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가 2017. 11. 28. 위 의료법위반방조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불기소결정은 피고에게 B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 등에 대한 방조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B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들어 곧바로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47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법원 4회 변론기일에 이를 때까지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다가, 재판장이 4회 변론기일에서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명하자 2023. 12. 11.에야 매매대금이 470,000,000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을 제21호증)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제1심법원에서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 663,574,950원(= 이 사건 토지 248,859,000원 + 이 사건 건물 414,715,950원)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5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시세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부동산의 당시 평균 거래 가격은 약 500,000,000원으로,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3. 8. 18.자 준비서면 제3, 4면).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는 산출과정을 거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제11호증)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치, 면적, 건물의 형태, 연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위 매매대금과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7)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약금	2017. 1. 9.	5,000,000	계좌이체(을 제8호증의 3)
2017. 1. 10.	45,000,000		
중도금	2017. 2. 22.	229,000,000	계좌이체(을 제8호증의 3)6) B의 처가 운영하는 N장례식장 명의 계좌로 이체
	71,000,000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고 상계처리(을 제8호증의 2)	
잔금	2017. 3. 25.	3,000,000	계좌이체(을 제8호증의 3)
2017. 3. 25.	147,000,000	피고 소유 아파트7) 경산시 ○아파트 P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받은 수표를 지급(을 제8호증의 1)	
합계	500,000,000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2. 27. 이전에 매매대금 500,000,000원 중 잔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 비추어 매매대금 지급시점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7. 3. 27.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13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과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부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3. 11. 23. 기준 가액은 573,519,800원(= 이 사건

토지 287,145,000원 + 이 사건 건물 286,374,800원)이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가운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은 443,519,800원(= 573,519,800원 -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0,000,000원)이 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금만으로도 위 443,519,8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443,519,800원의 한도 내로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443,519,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443,5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이성욱

판사주우현

별지

1) 2021. 9. 16. 기준 요양급여비용 환수원리금 합계 3,523,423,700원(= 원금 3,232,502,430원 + 연체금 290,921,270원)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 2017년 개별공시지가 11,400원/㎡² × 면적 451㎡²

4) 2017년 개별공시지가 11,400원/㎡² × 면적 4,135㎡²

5) 2017년 개별공시지가 4,550원/㎡² × 면적 1,501㎡²